

# 檢 討 報 告

< 안 건 명 >

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▶ 기획재정국 세무2과 소관

日 時 : 2009. 11 . 26 ( 목 ) 10:00

行政建設委員會

專門委員 명 금 길

[검토보고]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

○ 동 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시달됨으로서 기한연장, 일부 감면규정의 신설 및 재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 < 개정된 주요내용>

- (1) 안 제2조에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근거조문을 추가
- (2)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“운영”에서 “설치·운영”으로 변경하여 감면 요건을 강화
- (3)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으로 이관예정인 “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” 조문 삭제
- (4) 안 제5조에서는 한국노동교육원, 운수연수원,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없는 시설 삭제

- (5) 안 제9조(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제2항, 안 제12조(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), 안 제15조(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), 안 제16조(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), 안 제17조(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)에 있던 “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”라는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 규정에 관한 문구를 개별 조문에서 신설된 안 제25조(감면 제외대상)로 이관하여 총괄 명기
- (6)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같은 조 제2항을 삭제
- (7)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“주택을 제외한다”에서 “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”로 변경하여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
- (8) 안 제15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“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”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
- (9)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수익사업 토지 및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 폐지로 삭제
- | (10) 안 제19조에서는 지방세법 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1000분의 1.5를 적용 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“제188조”를 “제188조제1항제3호나목”으로 변경하고 “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”라는 문구를 추가

- (11) 제 27조(감면자료의 제출)의 구청장에게 감면을 받기 위한 감면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절차에 근거하도록 “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”라는 문구 추가
- (12) 부칙에서는 적용시한 1년 연장 및 일반적 경과조치 조정을 위해 제1조에서 이 조례는 “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며” 제2조에서 “2010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” 제3조에서 “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”라고 명시
- (1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맞춤법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

#### [검토의견]

○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「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」의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